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회

❖ **일시** 2016년 7월 1일(금), 14:00 ~ 17: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회

## □ 개요

- 일시 : 2016년 7월 1일(금), 14:00 ~ 17: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대상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책·제도 변화와 정부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 유치업체, 연관산업체 관계자 등 350여명

##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4:00~10:10	10'	• 개회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삼량 국제의료본부장
		• 인사말씀	보건복지부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과장
14:10~14:25	15'	• 의료해외진출법 추진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윤수현사무관
14:25~15:40	25'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및 실적 관련 변경내용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동현 유치기반팀장
	20'	•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안내	
	15'	•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안내	코리안리 김기연 파트장
	15'	• 의료사고 배상 공제조합 가입 안내	의협공제조합 신정수 부장
15:40~16:00	20'	coffee break	
16:00~17:00	60'	•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도 및 금융·세제 지원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 의료해외진출지원단장

# 목 차

1. 의료해외진출법 추진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 .....	1
2.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및 실적 관련 변경내용 안내 .....	14
3.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안내 .....	29
4.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안내 .....	36
5. 의료사고 배상 공제조합 가입 안내 .....	46
6.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도 및 금융·세제 지원 방안 .....	52

# **1. 의료해외진출법 추진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



## 목차

- I 추진 배경
- II 국제의료사업 현황
- III 추진방향
- IV 세부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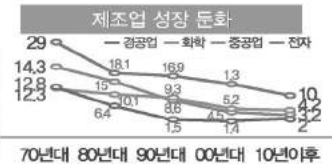




# I. 추진 배경

## 1. 경제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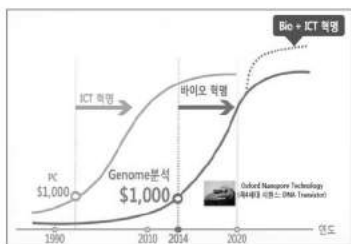
세계적 장기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 미래 먹거리 확보 필요



바이오헬스 산업,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신성장동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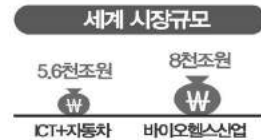
###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전환

- 유전체 정보 바탕으로 바이오 혁명 전망



### 8천조 규모의 세계시장

-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



-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 지속 증가 추세

###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 양질의 고용집약 산업

\* 보건의료서비스 (20.8명) VS 제조업 (9.4명)

- 융합비즈니스 모델 등장과 의료기관의 혁신플랫폼화



## 2. 한국의료의 SWOT

- ▶ 우수 인재 보건의료분야 집중, 세계적 의료수준과 인프라
- ▶ 저렴한 의료비용
- ▶ 신속한 진단 및 치료서비스

S

- ▶ 해외 인지도 부족
- ▶ 불법브로커 등 시장 교란행위 상존

W

- ▶ 세계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
- ▶ 한류로 인한 아시아 내 인지도 상승
- ▶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

O

- ▶ 각국의 경쟁 가속화

T

### 2-1. 강점 (Strength)

#### 세계 Top-tier 수준의 의료기술

- ▶ 7대 암 5년 생존율 미국 추월
- (한국 vs 미국, %)  
 위암 65.3 vs 26.0 / 간암 25.1 vs 13.6 /  
 자궁암 80.3 vs 70.2 / 대장암 71.3 vs 65.0 /  
 갑상선암 99.7 vs 97.3 / 유방암 90.6 vs 89.0 /  
 췌장암 8.0 vs 5.6

#### 선진국 대비 저렴한 의료수가

- ▶ 미국 대비 1/3, 일본 대비 2/3, 싱가포르 대비 90% 수준 (심장질환, 관절수술 등 8개 수술비용 기준)
- ▶ 양성자 암치료 : 미국 2~3억원 vs. 한국 0.5~1억원

#### 신속한 진단 및 치료서비스

- ▶ 주요 선진국 대비 짧은 대기시간 : 주요 대형병원 중심 One-stop 서비스 인프라
- ▶ 수술 전 CT/MRI 촬영 대기시간 : 미국/영국 3~6개월 vs. 한국 2일 내 가능

#### 첨단 의료기기 및 Health IT 인프라

- ▶ CT/MRI 등 첨단 의료장비 보유
  - 양성자 치료센터 보유
  - 다빈치 로봇, 사이버감마나이프 등 첨단 기기
- ▶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IT기반 운영시스템

## 2-2. 약점 (Weakness)

### 해외 인지도 부족

#### 현장의 목소리



"중국에서는 성형 외에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  
우리 의료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필요"

-바이오헬스 민간협의체 수출 및 해외진출 TF 회의, '16.4월

### 불법브로커 등 시장 교란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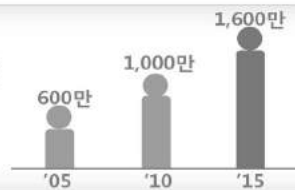
7

## 2-3. 기회 (Opportunity)

### 세계 보건의료 시장의 급격한 성장

#### 한류로 인한 아시아 내 인지도 상승

외래 관광객 수: ('05) 600만 → ('15) 1,600만



###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



"올 6월 시행되는 이 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16.1월

8



## 2-4. 위협 (Threat)

### 각국의 경쟁 가속화

#### 일본

- ▶ 범정부 컨트롤타워(의료국제전개전략실)
- ▶ 해외 환자유치·의료기관 해외진출 위한 민관 합작지원 전문기관(MEJ) 설치

#### 중국

- ▶ 의료서비스 관련 보건산업의 규모 확대
- ▶ 민간자본의 의료서비스 진출 추진
  - 해외자본 의료기관 허용, 상해 의료복합단지 조성

#### 싱가폴

- ▶ 싱가포르 메디신 설치(03~), 의료관광 전담기구이자 정부 협의체
- ▶ 과학기술청(A\*STAR), 바이오·의료분야에 전체 R&D 50% 투입

#### 태국

- ▶ 정부중심의 환자 유치 정책 (의료관광 5개년 전략계획)추진
- ▶ 의료 관광객 대상 비자 면제 추진

9

## II. 국제의료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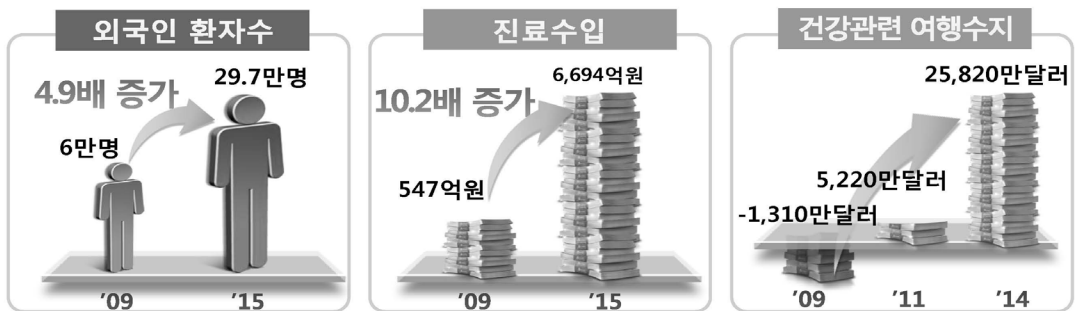
## 1. 추진경과

- '09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의료법 개정, 1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
- '11 ● 병원플랜트 해외진출방안 국정과제 채택 (경제정책조정회의, 1월)
- '12 ●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방안 발표 (위기관리대책회의, 10월)
- '13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육성방안 발표 (관광진흥확대회의, 7월)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 발표 (대외경제장관회의, 11월)  
중등센터 개소 (12월)
- '14 ● (가칭)국제의료특별법 제정 등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무역투자진흥회의, 8월)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병상규제 완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9월)
- '15 ●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개소 (8월)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 (12월)
- '16 ●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연두보고 (1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개소 (2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3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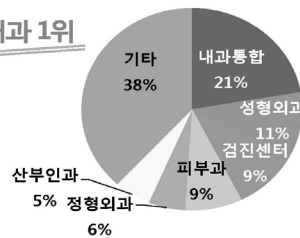
11

## 2. 외국인환자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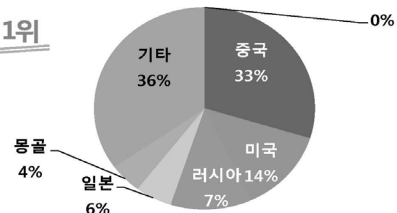
- ✓ '09~'15년간 외국인 환자 및 진료수입 지속 증가
- ✓ '15년 상반기 누적 120만명 돌파



진료과목: 내과 1위



국가: 중국 1위



12

### 3. 의료 해외진출

✓ '15.12월말 기준 18개국에 누적 141건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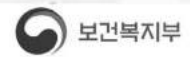


< 연도별 진출기관수 (누적치, 단위: 개소)>

####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확산

- ▶ 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병원 5년 위탁 운영(서울대병원)
- ▶ UAE VPS와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운영(서울성모병원)
- ▶ 사우디 국가방위부 병원 HIS 시스템 수출(분당서울대병원)
- ▶ 중국 이싱세브란스VIP 검진센터 건립(연세의료원) 등

13



## Ⅲ. 추진방향



## 의료해외진출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성과 창출

###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



#### 제도적 지원체계 완비

-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6월)
-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7월)
- 해외진출 종합계획 마련 (9월)

#### 신뢰성 · 인지도 제고

- 불법브로커 단속 (반기별)
-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6월)
-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4월) 및 진료비, 수수료 조사 · 공개 (9월)
- 한국의료 브랜드 홍보 및 국제교류

#### 서비스 질 향상

- 종합지원창구 개설 · 운영 (2월)
-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 (3분기)
-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

15

## IV. 세부 추진과제



## 1. 제도적 지원체계 완비

### 의료 해외진출법의 차질없는 시행

#### 주요내용

- (종합적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진출기관 신고제 도입 및 한국의료 패키지 지원 근거 마련, 금융·세제 지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주기 지원, 유치기관 평가·지정 등
- (시장 건전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알 권리 강화, 과도한 수수료 요구 금지,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 및 불법브로커와의 거래 금지 등
- (규제 개선) 외국어 의료광고 제한적 허용,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근거 명확화

#### 추진일정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5.4) 등 입법절차 진행
-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6.23)

17

### 참고: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 (배상책임보험) 유치의료기관은 의병원급 연간 총 배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 (유치병상수 제한) 상급종합병원 5%, 종합병원 8%
- (유치기관 평가) 소요비용은 유치기관이 부담  
- 평가항목: 외국인환자의 권리와 안전,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전문인력 보유,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및 진료과목,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등
- (금융·세제지원) 신고한 진출 의료기관에 중소기업 대상 수은법, 산은법, 무보법 등에 따라 지원
- (의료광고) 유치의료기관이 피부과, 성형외과 광고 시 타 진료과목과 균형
- (신고포상금) 불법 유치행위 신고 시 1천만원(벌금액 또는 과징금액에 비례) 이내 지급

18

###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복지부장관 (위원장)**

사무국

<p><b>관련 기관장</b></p> <p>수은, 산은, KHIDI, KOHIL, KOTRA, KOFIH, 관광공사 등</p>	<p><b>관계부처</b></p> <p>기재, 외교, 산업, 문체, 법무, 국토, 금융위 등</p>	<p><b>민간 전문가</b></p> <p>학계, 의료계 등</p>
--	---	---------------------------------------

### 종합계획 수립

- **주요내용**
  -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조성
  -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관련 내용 등
- **향후계획**
  - 각계 의견 수렴(5~6월), 초안 마련(7월) 및 정책심의위원회 심의(9월)

19

## 2. 한국의료의 신뢰성 제고

### 불법브로커 단속

-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운영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1577-7129)
- 복지부-경찰청 MOU 체결 (4.20)
- 불법브로커 합동 단속 (반기별)
-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

###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환자가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환급
- 미용성형 시장 투명화 및 외국인환자 관심도 제고 효과



### 진료비·수수료 조사·공개

- 진료과목별·의료기관 규모별 유치업체 수수료 및 유치의료기관 진료비 조사, 홈페이지 공개

20

### 한국의료 브랜드 홍보 및 국제교류

- 한국의료 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 건강검진 플랫폼, SNS
  - 주요국 기내지 광고
  - 홍보 영상 제작·송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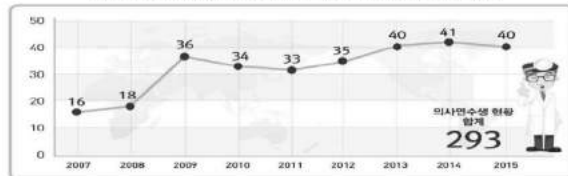


- 나눔의료 / 외국의료진 연수 / 현지설명회 등

< 나눔의료 >



< Medical Korea Academy 의사연수생 현황 >



- "Medical Korea 2016" 개최 (11월)

### 3. 서비스 질 향상

####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 영·중·러·일·아랍어 상담
  - 의료기관 안내, 비자상담, 불안·고충 상담 등
- 의료통역사 연계
-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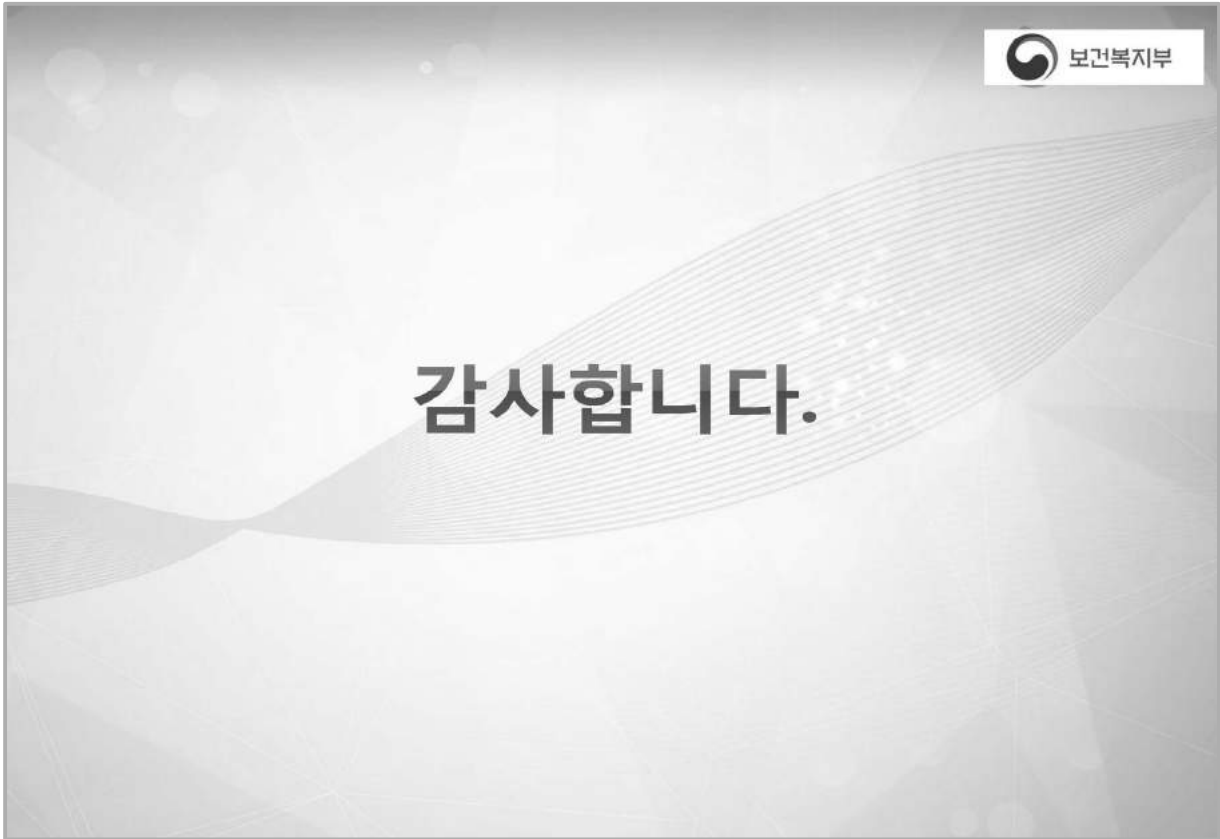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 의료서비스·비의료서비스 평가 → 일정 수준 충족 시 선별적 지정
  - 지정마크 부착, 지정 유치기관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 디렉토리북 및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유치정보시스템에 인증 의료기관 게시, 국제행사 개최 시 우선참여권 부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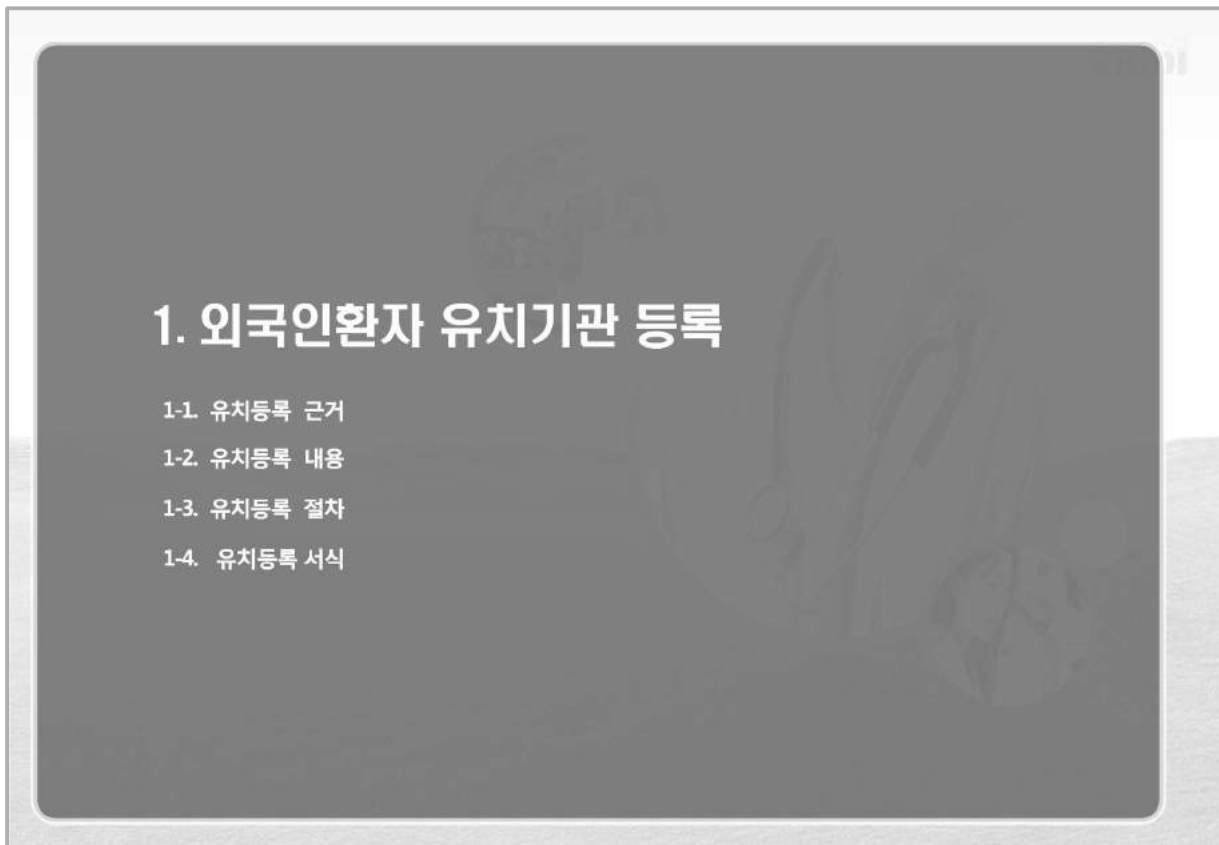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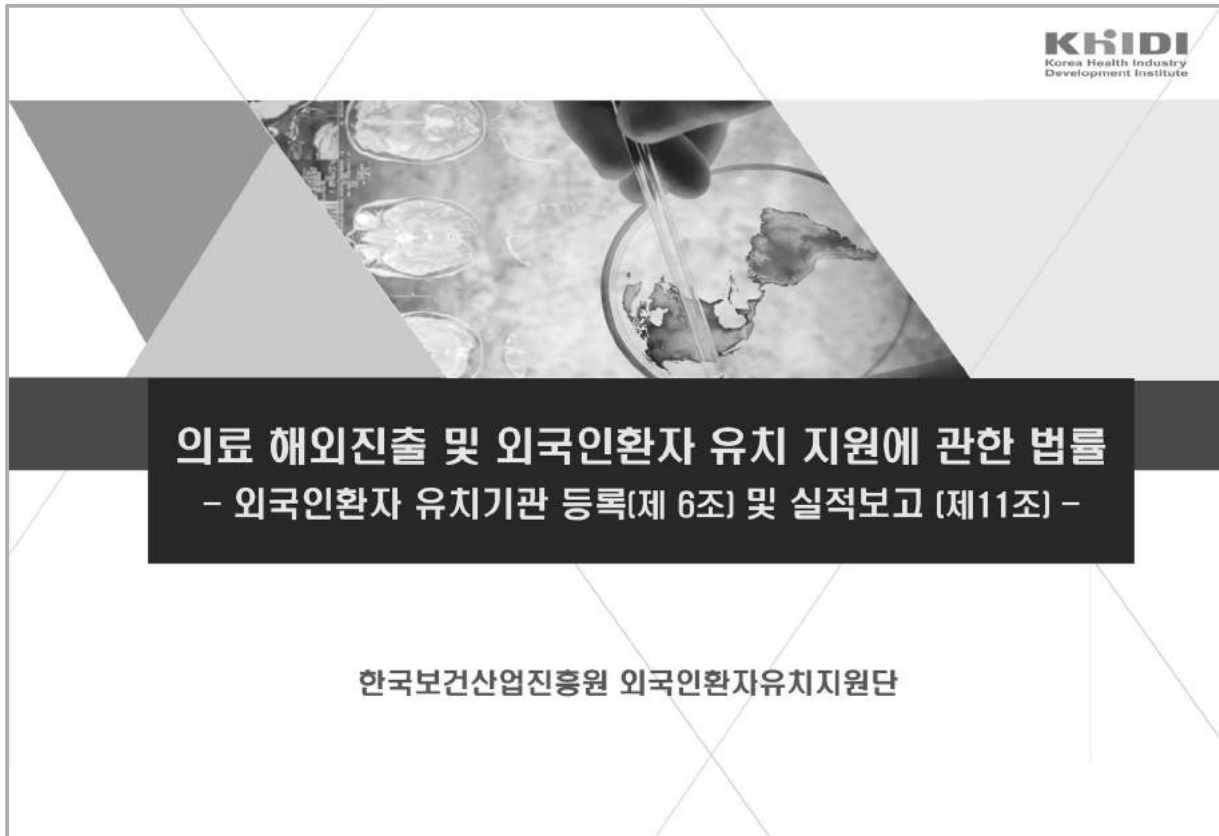
####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

- 직무교육: 외국문화·언어 등 국제역량을 갖춘 의료인 양성, 마케팅·의료경영 등 직무별 교육
- 의료통역능력검정제도 도입(10월)





## **2.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및 실적 관련 변경내용 안내**



### 1-1. 유치등록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단,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2.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 ②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1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 1-1. 유치등록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1. 유치등록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제4조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 1-1. 유치등록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조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요건)

- ④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 2. 연간 배상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 가.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 1억원
    - 나. 병원급 의료기관 : 1억원
    - 다. 종합병원 : 2억원
  - 3.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것

## 1-1. 유치등록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4조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요건)

- ②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을 말한다.
  -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 2.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③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1-1. 유치등록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5조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절차)

- ①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2.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3.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 서류
  - 4. 사업계획서
- ②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 (보증보험증권)
  - 2. 자본금을 보유 증명 서류
  - 3.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 4. 정관 (법인)
  - 5. 사업계획서
- ③ 복지부장관은 등록시 등록증을 발급하고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 1-1. 유치등록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갱신 절차)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등록 갱신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가.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배상보험 가입 증명 서류
    - 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가. 보증보험가입 증명원, 자본금 보유 증명원, 사무실 소유권 증명원
    - 나. 유치업자 등록증
- ② 등록 갱신 신청에 따른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1-1. 유치등록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7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유치등록 내용**

**유치등록 요건**

의료기관

- 전문의 1명 이상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연간 배상한도액은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 1억원, 종합병원 : 2억원)
-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전문과목

유치업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 가입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 1억이상 금액)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 국내 사무소 설치

**KHIDI**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1-2. 유치등록 내용**

**제출 서류**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 서류

유치업자

- 정관(법인일 경우)
-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
-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혹은 사용권 증명 서류

**KHIDI**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1-2. 유치등록 내용

### 유의사항

- **(등록 취소시 재등록 유예기간 신설)**
  - 미등록 유치행위 등으로 등록취소 시, 취소일자로부터 1년 이내 재등록 불가
- **(대여금지)**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 **(유효기간 신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
  - 재등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등록 갱신 필요(제6조제3항)
- **(기등록 기관 갱신)**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 갱신 필수

## 1-2. 유치등록 내용

### 위반 시 벌칙사항

- **(시정명령)** 등록요건 갖추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부과
- **(등록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행정처분
- **(과징금)** 미등록 유치행위를 한 자는 매출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 **(신고자 포상)** 미등록 유치행위자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포상금 지급
- **(벌칙)** 미등록 유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외 부정 등록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위 벌칙규정 적용 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벌금형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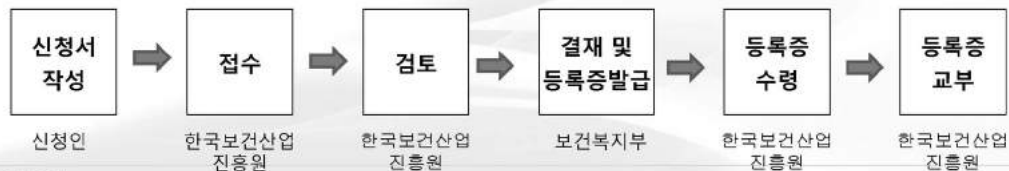


1-3. 유치등록 절차

**등록 절차**

- 유치기관이 등록절차를 진행할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등록증 교부
- (신청서 작성)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안내 및 작성
- (접수) 신청인은 등록요건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
- (검토) 진흥원은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 및 검토 후 복지부에 승인 요청
- (결재 및 등록증 발급) 복지부의 최종 승인 후,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진흥원은 복지부로부터 발급된 등록증을 수령
- (등록증 교부) 신청인에게 등록증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안내자료 교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증 발급 절차



1-3. 유치등록 절차

**등록 갱신절차**

구비서류 세부사항

- 의료기관 제출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진료과목 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유치업자 제출서류
  -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및 실적 관련 변경내용 안내

### 1-3. 유치등록 절차

#### 변경사항

##### 의료기관 등록

- (신설)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제6조 제1항 1호)
- (신설) 유치기관 등록 유효기간제(3년) (제6조 제4항)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필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요건 변경 내용>

등록요건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이상	○	○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X	○
유치업자	보증보험증권 가입	○	○
	자본금 1억원 이상	○	○
	국내 사무소 설치	○	○
공통	등록 유효기간 제도	X	○(3년)

KHIDI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1-4. 유치등록 서식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소호기관명칭	의료기관 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유치 진료과목	
대표자 성명	발행 일자	

「의료 행위규칙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유치업자명칭	유치업자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발행 일자	
주소		

「의료 행위규칙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영허치서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계획서 5부  
다. 한 개소당 한개소 이상 의료기관은 전문의가 영안 및 치과종사자 1명  
리. 별 개소당 한개소 이상 유치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가. 장려명인명 명부에 등재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별 개소당 한개소 이상 유치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한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리. 별 개소당 한개소 이상 유치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한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미. 별 개소당 한개소 이상 유치에 대한 소유권이니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KHIDI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6-4. 유치등록 서식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갱신 신청서**

\* 1. 기재는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표시를 합니다. (선택)

등록번호	연수일차	제1차연차
종류	외국인분 [ ]	유치업자 [ ]
신원인	기관명	병력자
대표자 성명	성년월일	
주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원인 (인인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가. 의료기관 갱신서,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4호 적용 1부  
                   나. 유치업자 갱신서,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적용 1부

<갱신 신청서>



6-4. 유치등록 서식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1. 업 체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성년월일
5. 유치 진료과목
6. 유효기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1. 업 체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성년월일
5. 유효기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의료기관 등록증>
<유치업자 등록증>



## 2. 실적 보고

- 2-1. 실적보고의 근거
- 2-2. 실적보고의 개관
- 2-3. 실적보고의 대상
- 2-4. 실적보고의 방법

### 2-1. 실적보고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법 제11조 (보고의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사업실적 보고)

-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 ②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 2-2. 실적보고 개관

### 실적보고 개관

#### 실적보고 대상

- (국적)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 (예외) 주한미군·외교관 및 그의 가족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대상 포함 (근거: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대상 제외)

#### 실적보고 내용

-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 규모 파악
-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환자 주요 질환 및 이용 진료과 파악
-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의 한국의료 이용유형 및 세부동향 파악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 객관적 사업성과 및 시장추이 분석,  
정부의 유치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2-3. 실적보고 대상

### 실적보고 대상

#### 의료사증

(Medical Visa)

- ▶ 의료사증 소지자  
→ 외국인환자(O)  
# 단기(C-3-3), 장기(G-1-10)

- ▶ 의료사증 미소지자  
→ 다음 단계로

#### 국적 & 국민건강보험

(Nationality)  
(National Health Insurance)

- ▶ 대한민국 국적자  
→ 외국인환자(X)  
# 이중국적자 : 외국인환자(X)

- ▶ 외국 국적자  
→ 건강보험 확인  
5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외국인환자(X)  
5 건강보험 미가입자  
→ 다음 단계로

#### 거주자 확인

(Residence)

-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 확인  
5 외국인등록자  
→ 외국인환자(X)  
5 외국인 미등록자  
→ 외국인환자(O)

- ▶ 외국국적동포 경우  
→ 거소신고 확인  
5 외국인등록자  
→ 외국인환자(X)  
5 외국인 미등록자  
→ 외국인환자(O)

#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 직원·주한미군 및 그 가족은 외국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인환자에 포함

2-4. 실적보고 방법

실적보고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적보고



2-4. 실적보고 방법

실적보고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적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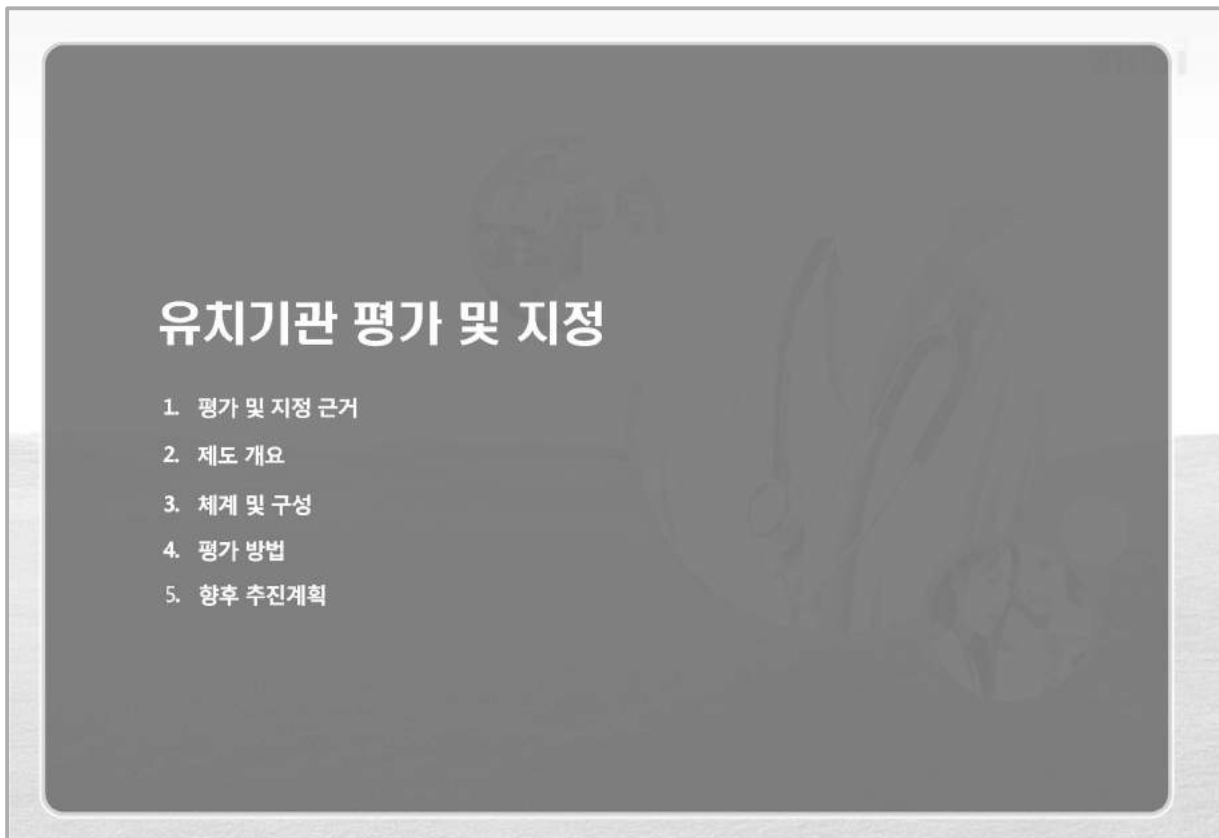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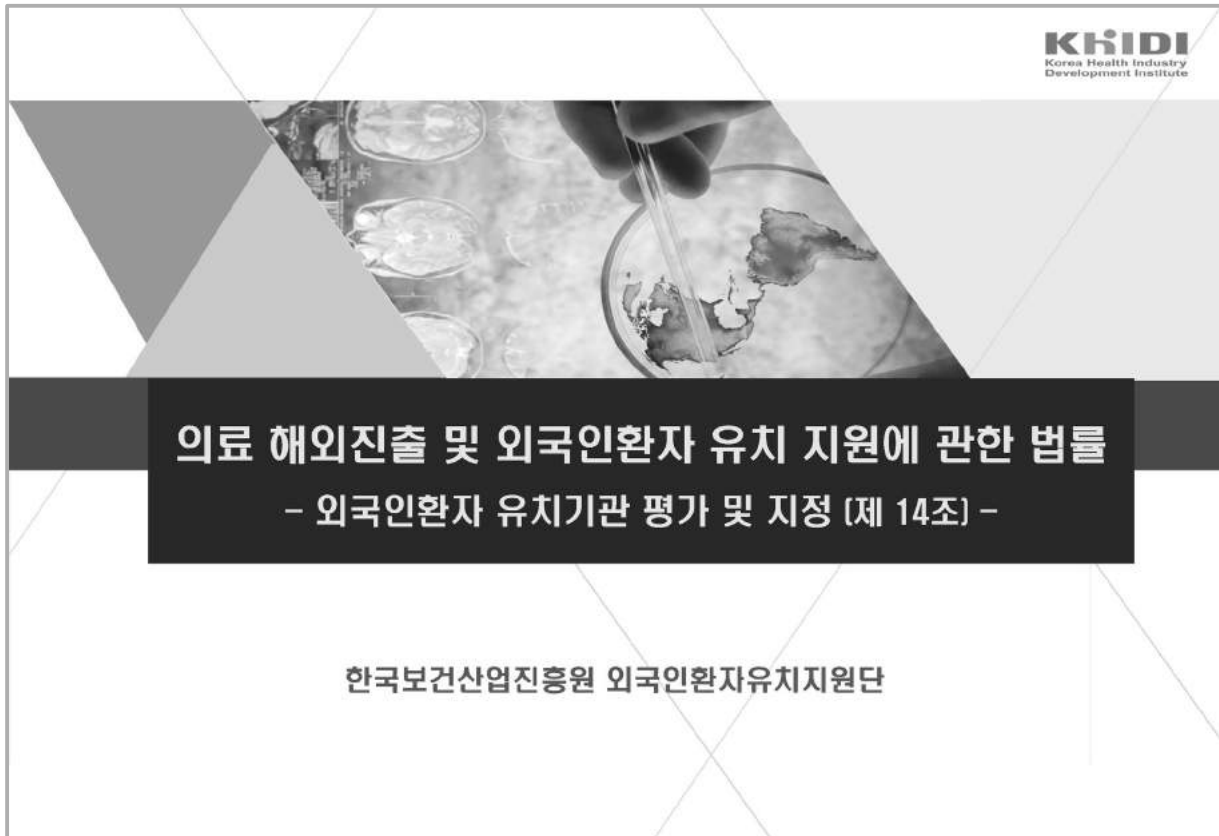


2.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및 실적 관련 변경내용 안내



### **3.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안내**





## 1. 평가 및 지정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 ① (선별적 지정)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 (선택사항)
- ② (지정마크 부여) 지정 받은 유치기관은 지정표시 사용 가능
- ③ (유효기간)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2년 단위 재지정 가능)
- ④ (지정기관 대상 지원) 홍보 및 외국인환자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 2. 제도 개요

###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국가간 경쟁 심화

- ▶ [일본]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
  - ▶ '11년 1월 MEI(Medical Excellence Japan) 설립, 외국인환자유치 및 의료수출 지원, 의료 비자 신설 등
- ▶ [대만] '07년 이후 6대 신항사업으로 중국인 미용 분야에 특화
  - ▶ '10년부터 의료서비스 국제화 액션플랜을 통해 4

#### 중국 미용성형 환자 의료사고 발생으로 한국의료 신뢰도 저하

- ▶ 최근 중국 성형 의료관광객이 증가하며, 시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 증가
  - ▶ [시장질서 저해행위] 대리수술, 의료진 정보제공 부족, 고액 수수료 편취(일명 불법 브로커)

#### 사업 목적

- ▶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평가를 통해 한국 의료기관의 서비스 안전성 관리 및 유치사업기반 강화
  - ▶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유치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성, 서비스 질 및 만족도 제고
  - ▶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 2. 제도 개요

###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 추진 경과

2013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관련 인프라 현황조사
2014년 12월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비의료서비스 평가기준 초안 마련
2015년 3~5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의료서비스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업무 협의
~ 2015년 6월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평가기준 초안 마련
2015년 11~12월	유관 기관·협회 의견수렴 및 보완사항 검토
2015년 12월	의료기관 평가·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의료해외진출법 제정, '15.12.22)

4

## 2. 제도 개요

###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법적 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16.6.23 시행])

#### ▶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 ▶ [선별적 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 [등록과 달리 의무사항이 아님]
- ▶ [지정마크 부여] 지정 받은 유치기관은 지정표시 사용 가능
- ▶ [유효기간]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2년 단위 재지정 가능)
- ▶ [지정기관 대상 지원] 홍보 및 외국인환자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 평가기준 개발 방향

- ▶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수적인 최소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측정 할 수 있도록 구성
- ▶ 타 인증 (의료기관인증, JCI)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외국인환자에 특화된 평가 항목 및 기준 구성
- ▶ 외국인환자에 대한 서비스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평가 항목 개발 및 설계
- ▶ 평가결과에 따른 의료기관 서열화가 아닌,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5

### 3. 체계 및 구성

#### 평가기준(안)

- ▶ [환자안전체계] 외국인환자의 안전보장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
- ▶ [외국인환자특성화체계] 외국인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비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노력을 평가



### 4. 평가 방법

#### 평가개요

- ▶ [지정 시 고려사항]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국내외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 ▶ [지정 표시] 지정받은 유치 기관은 지정 표시 사용 가능
  - ▶ 외국인환자유치 지정 기관에 지정서, 지정패를 교부하고 현판을 제작·부착하며 기관 홈페이지, 홍보 CD, 브로셔(리플릿), 현수막 등에 광고 시 활용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Medical Korea 다국어 홈페이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플랫폼 등에 지정 기관을 상시 게재
- ▶ [유효기간]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 ▶ 등록의 갱신 : 2년 단위로 재지정 가능
- ▶ [평가 기준]
  - ▶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 국내외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 ▶ [유치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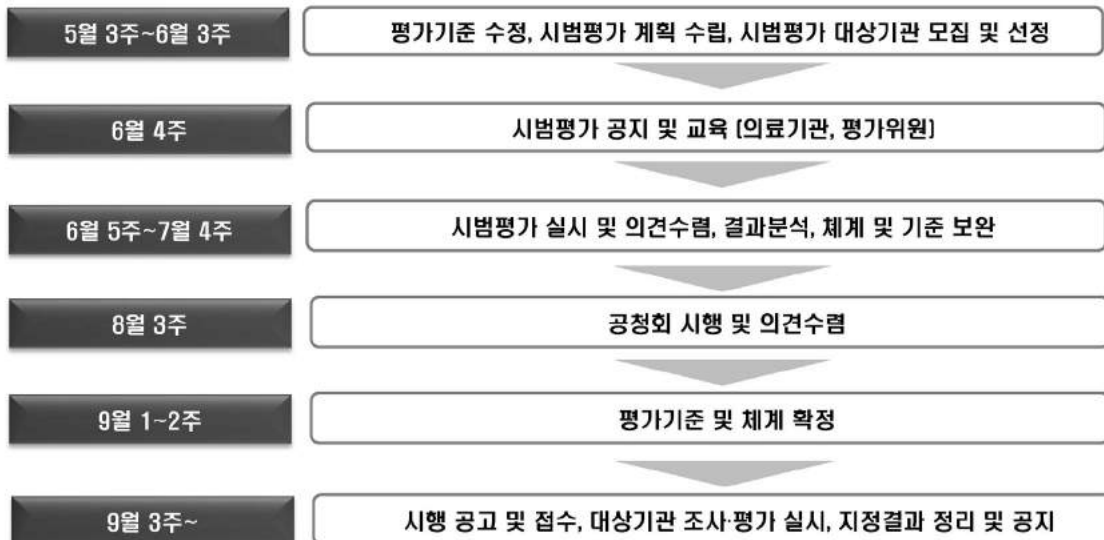
## 4. 평가 방법

### 평가방법(안)

- ▷ [조사·평가 방법] 조사위원은 의료기관 규모별 2~4명으로 구성하고, 의료 및 비의료 서비스 부문을 각각 평가하여 결과 도출
  - ▶ 의료기관 규모별 2~4명으로 구성, 의료 및 비의료 서비스 부문을 각각 평가
- ▷ [평가방법]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두 영역 모두 'Pass'한 의료기관에 한해 '지정' 등급 부여
  - ▶ 기존 의료기관 인증 및 JCI인증 획득기관은 의료서비스 부문 평가 면제
- ▷ [평가 비용]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이 부담
- ▷ [평가·심의 지정위원회] 복지부, 진흥원, 인증원, 관련 협회 등 10인 이내로 구성
- ▷ [평가 기간] 상시 신청·접수, 평가 및 지정 수행
- ▷ [진행사항 점검] 평가·지정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구현

## 5.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 일정





## **4.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안내**

**INDEX**

---

- 1. 의료배상책임보험
- 2. 프로그램 소개
- 3. Q & A

KOREANRE

---

**1**

**의료배상책임보험**

KOREANRE



## 의료배상책임보험이란?

### 정 의

❖ 의사 및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전문서비스로 인한 의료사고로 제3자(환자)에게 일어나는 신체장애나 사망에 대해 피보험자(의사·병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가입대상

❖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조산소, 보건소 등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의료사고 유형

- ❖ 오진·잘못된 검사
- ❖ 수술상의 실수·고지 및 동의의 불충분
- ❖ 마취제나 약물의 잘못된 투여
- ❖ 의료인의 관리부주의 (Vicarious Liability)

KOREANRE

## 의료사고

### □ 가수 신해철 사망 사고(2014.10)

- ▶ 2014.10.17 A병원에서 장협착수술 받음
- ▶ 2014.10.22 통증으로 인해 A병원 재입원하여 치료중 심정지  
→ 종합병원 후송하여 수술
- ▶ 2014.10.27 뇌손상으로 사망



[2016.6.15]

故 신해철 집도의, 수십억 빚더미에 앉아...

- 사망사고 이후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재산 가압류 진행중

KOREANRE

## 의료사고

### □ UAE 소녀 사망 사고(2013.6)

- ▶ 2013.05.01 B병원에서 척추측만증수술 받음
- ▶ 2013.05.08 2차 수술 받음
- ▶ 2013.06.12 3차 수술 받던 중 사망

[2013.8.3]

**B병원, 의료사고 이후..**

'중동 갑부들' 일본으로 수술 · 치료지 변경

[2015.3.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B병원, UAE 소녀 사망사고에 대해  
의료과실 일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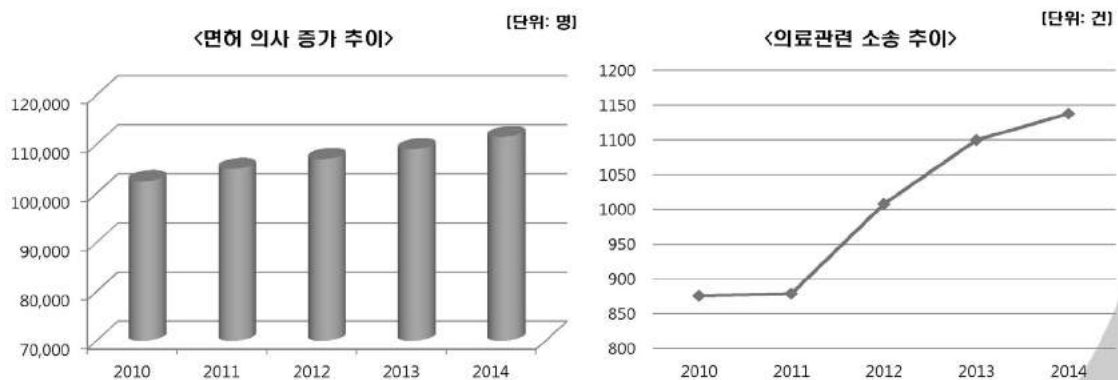


· 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KOREANRE

## 현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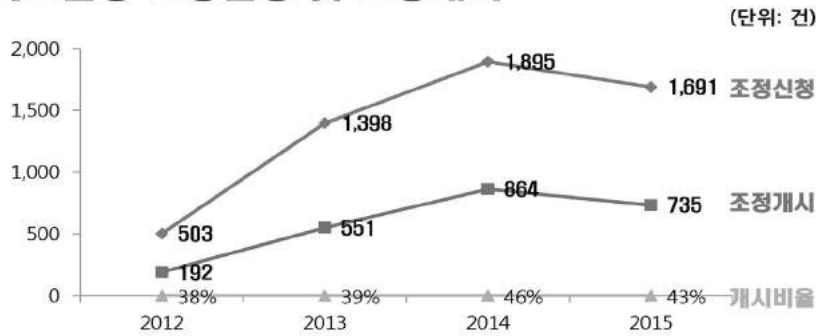
### □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관련 소송 추이



KOREANRE

## 현황자료

### □ 의료분쟁 조정신청 및 조정개시



#### ▶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2012.4.8)

- 기존 조정절차상 의료인인 피신청인이 거부 시, 조정성립 곤란
- 이에 따라 의료사고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제도 도입 후 5,487건의 조정신청 중 2,342건이 피신청인 동의 얻어 조정개시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5)

KOREANRE

## 관련이슈

### □ 손해처법 통과 (2016.5.19)

#### ▶ 내용

- 환자가 진료 후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게 될 경우, 병원의 동의가 따로 없어도 환자 측에서 의료사고 절차진행 가능
- 의료분쟁조정법 상의 조정거부권 삭제

#### ▶ 영향

- 의사들의 위축진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KOREANRE

## 2 프로그램 소개

KOREANRE

### 보험상품

- 단체 및 개별 병원 대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 판매중

단체	개별 병원
개원의 협의회 (내과/소아과/산부인과 등 15개) 중소병원협회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KOREAN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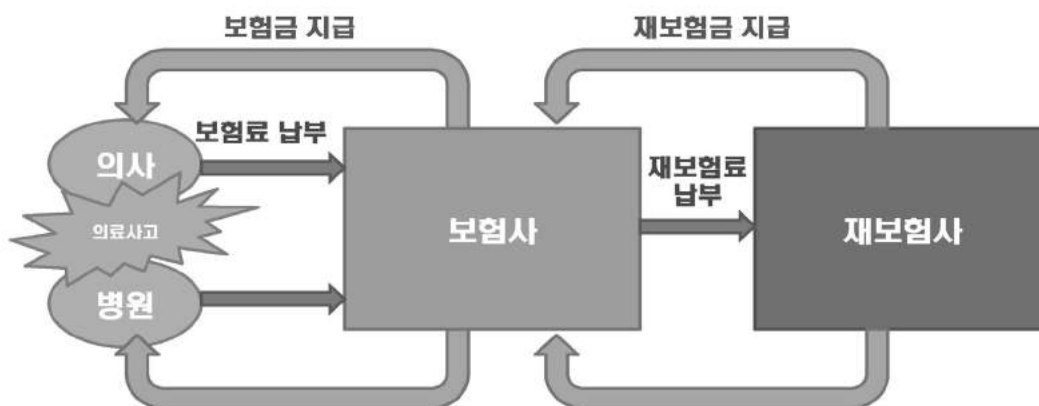
## 가입절차

1. 보험사(본사 또는 영업점)에 유선으로 가입문의
2. 해당 영업점의 담당자 → 병원 방문 및 상담 서비스 제공
3. 가입 서류 작성 후 제출
4. 보험료 납부 및 증권 수령하여 보험가입 확인

※ 코리아리는 재보험사인 관계로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KOREAN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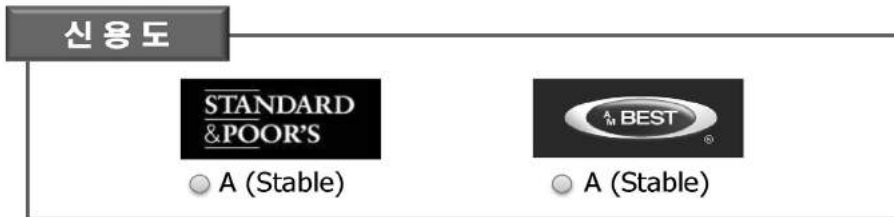
## 가입구조



KOREANRE

## KOREAN RE

- 자산 8.6조, 수입보험료 6.6조 규모  
- 아시아 1위, 세계 9위 재보험회사



- ▶ 53년 동안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자로서  
보험계약자 및 원보험회사의 안전장치 역할 수행

KOREAN RE

## 가입시 주의사항

1. 외국인 환자 담보여부 확인!
2. 보상한도액이 충분한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항의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가입 및 유지하여야 함

의료기관	최소 연간 배상한도액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1억원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 ※ 내/외국인 통합상품 가입 시 보상한도액 공유  
: 내국인 의료사고로 인해 보험 소진 시, 외국인에 대한 담보 없음  
→ 보상한도액 증액 또는 재가입 필요!!

KOREAN RE

## 해외사례 (참고)

### □ 미국 고액사고 사례

\$70.8million. Pellicer v. St. Barnabas Hospital, Essex County, New Jersey A-1472-05.

#### ▶ 2007년 8월 17일, 810억원 배상책임 판결 사례

- 뉴저지 Barnabas 병원
- 4개월 영아 요추수술 중 뇌손상 입어 575억원의 위로금을 포함한 810억원의 배상 판결

### □ 미국 의료배상보험 가입현황

#### ▶ 보상한도액

- 소형 병원 : 10억원 ~ 50억원
- 중형 병원 : 100억원
- 대형 병원 : 200억원 ~ 5,000억원

#### ▶ 자기부담금 -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수준. 보험료 낮추기 위해 높은 수준 유지

KOREANRE

## 해외사례 (참고)

### □ 해외 의료배상보험 의무화 현황

미 국

- ▶ 대부분의 주에서 의료배상보험 가입 법적으로 의무화
- ▶ 의무화 아닌 주에서도 의료배상보험 가입시 의료행위 가능  
→ 가입율 100%에 가까움

타 의무화  
운영 국가

- ▶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들
- ▶ 스페인,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터키도 의무보험

KOREANRE

**3**

**Q & A**

KOREANRE



## **5. 의료사고 배상 공제조합 가입 안내**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 AID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배상공제 상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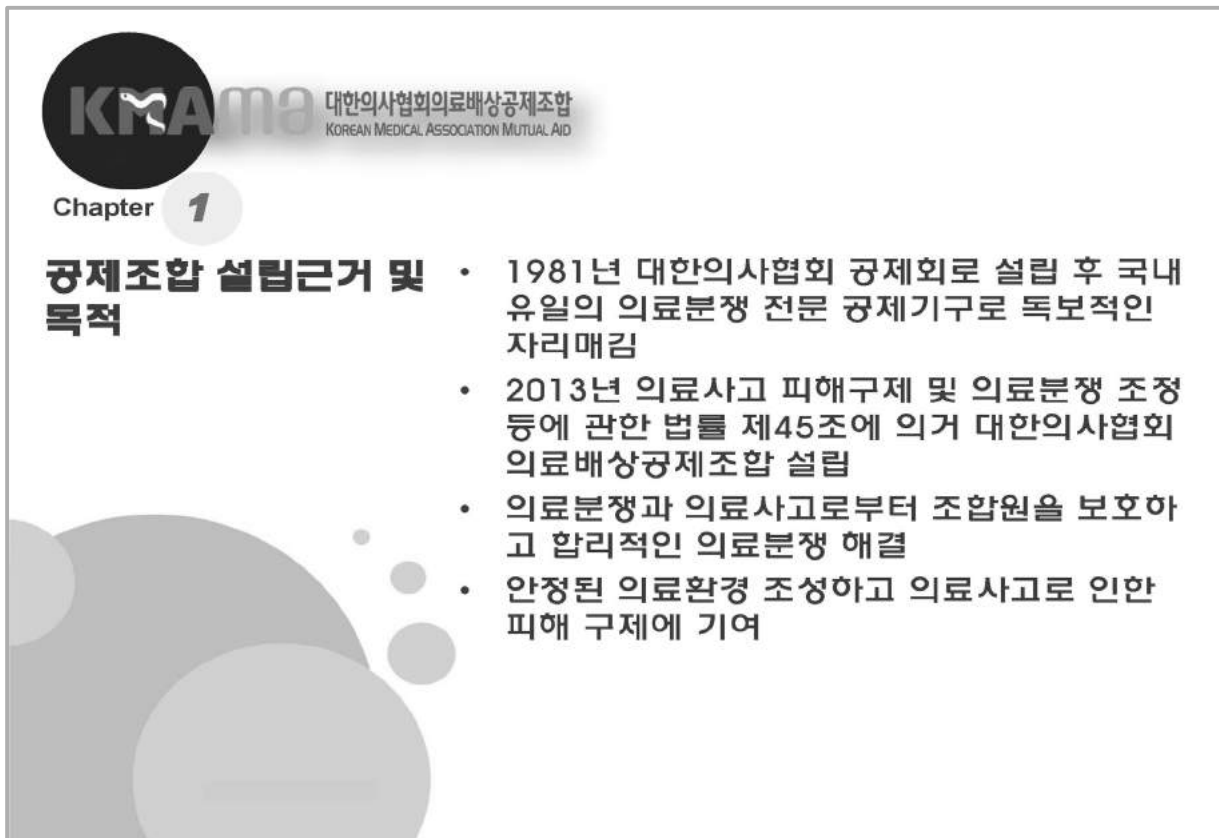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 AID

### 목 차

1.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 및 목적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기관  
(의무보험 관련 법 규정)
3. 의료배상공제의 특징
4. 의료배상공제 상품내용
5. 의료배상공제 상품구성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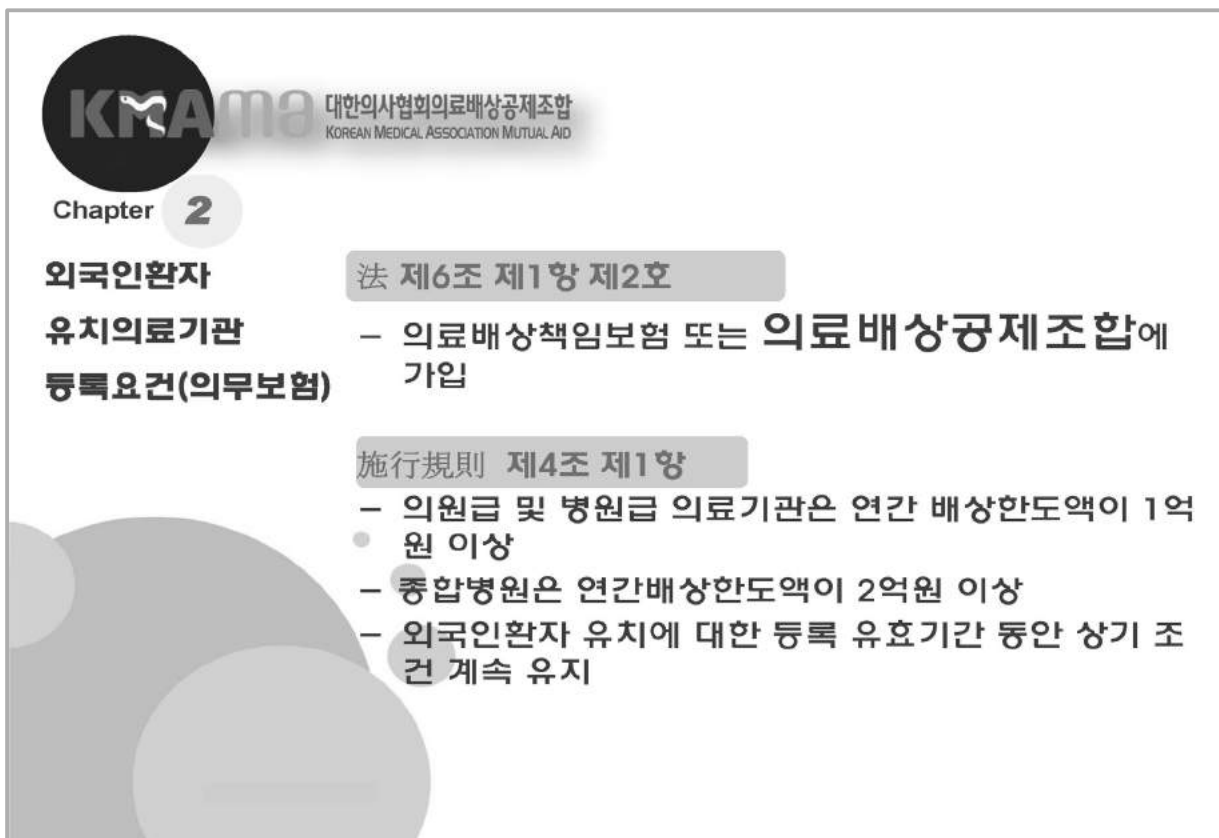


**KMA**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 AID

Chapter **1**

**공제조합 설립근거 및 목적**

- 1981년 대한의사협회 공제회로 설립 후 국내 유일의 의료분쟁 전문 공제기구로 독보적인 자리매김
- 2013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
-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에 기여



**KMA**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 AID

Chapter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의무보험)**

**法 제6조 제1항 제2호**

-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

**施行規則 제4조 제1항**

-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간 배상한도액이 1억 원 이상
- 종합병원은 연간배상한도액이 2억원 이상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상기 조건 계속 유지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 AID

Chapter **3**


**의료배상공제란?**

**공제조합이 사업을 총괄운영**

- 공제조합이 의료배상공제 계약 및 사건처리/심사/보상의 주체
- 안정적 위험분산기능 확보를 위해 삼성화재에 재공제 가입

**의료배상공제의 특징**

- 15년전 부터 외국인환자 담보 및 의료분쟁처리
- 의료분쟁 발생 시부터 보상까지 전담직원의 one-stop
- 서비스를 제공
-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공제조합이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의 법률지원 제공
- 타 손해보험사와 구별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합의를 지원(서울본부 외 주요 지역별로 공제조합 주재사무소 설치운영)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 AID

Chapter **4**


**의료배상공제 상률내용**

**보상하는 손해**

의료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진자의 신체장애나 사망에 대하여 피공제자(가입된 조합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공제자의 수진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한 필요 . 유익하였던 비용
  - 제3손해의 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 유익하였던 비용
  - 피공제자가 미리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 화해 . 조정에 관한 비용
  -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공제자가 공제조합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 AID

**Chapter 5**

**의료배상공제  
상품구성**

	구분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기본담보)	의료과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인사 소송 대행 가능)
특별약관 (선택담보)	조의금, 합의금, 형사합의금 담보	수진자의 사망(뇌사 포함)으로 수진자측이 의료분쟁을 제기한 경우 관습적으로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을 보상
	벌금담보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담하는 벌금을 보상
	형사방어비용 담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구속되었거나 형사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보상
	경호비용담보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절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하여 사건 처리 수습,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경호비용을 보상(경호원 출동 서비스)
	초빙의·마취의 담보	기명 피공제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피공제자의 수진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기명피공제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초빙의/마취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수진자의 신체장애 또는 사망(뇌사포함)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의료분쟁을 제기하거나,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공제자에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가하여 기명 피공제자의 후유장애, 사망사고 발생 및 기명 피공제자가 소유, 관리하는 시설에 입힌 손해 발생의 경우 피공제자(혹은 유족)에게 보상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 AID

**Chapter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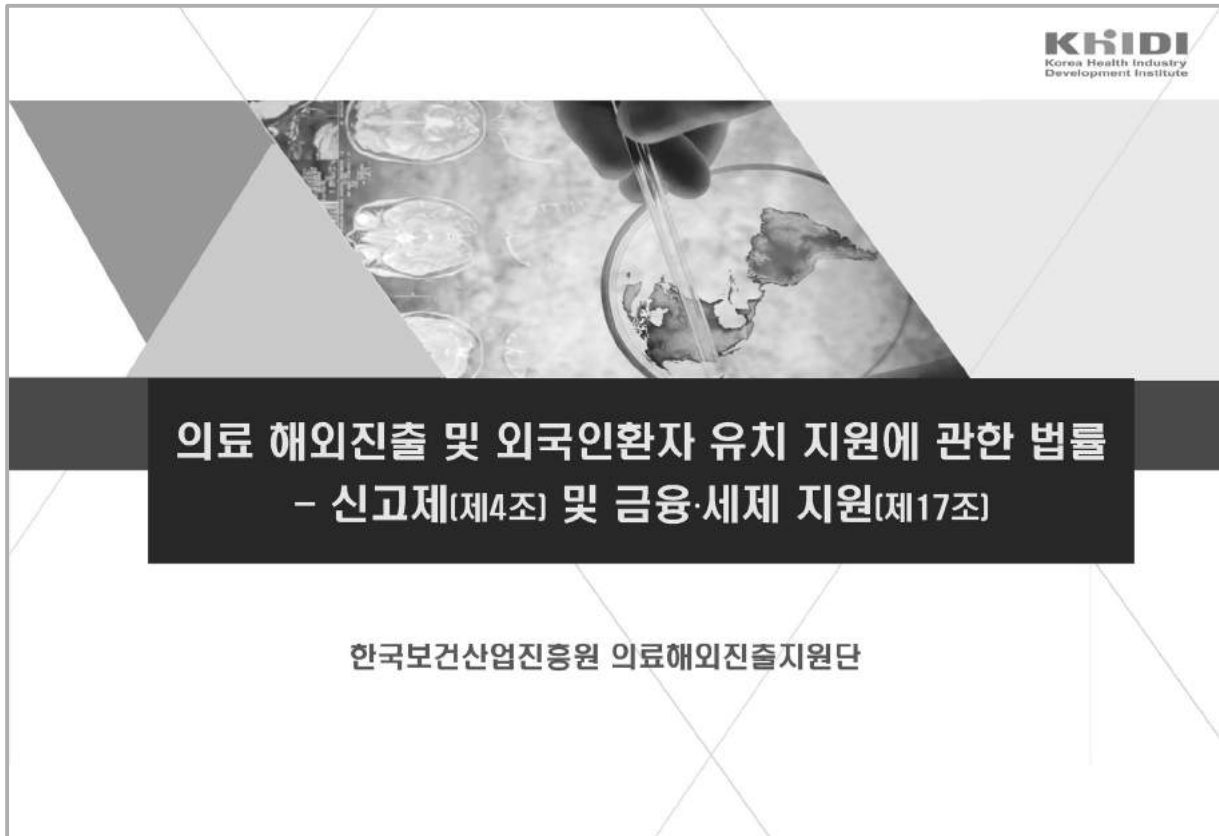
**결론**

- **공제조합의 의료배상공제 가입**
  - 의료사고 처리에 대한 35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보유
  - 저비용 고효율 구조
  - 대한의사협회, 각시도 의사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
  - 의료분쟁에 대한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
- **공제조합 가입 및 사건 상담처**

**☎ 1899-0059**



## **6.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도 및 금융·세제 지원 방안**



CONTENTS	
<b>1. 신고제</b>	
1-1. 신고제 근거	
1-2. 주요 용어	
1-3. 신고 주체 및 내용	
1-4. 신고 절차	
1-5. 신고 혜택	
1-6. Q&A	
<b>2. 금융·세제 지원</b>	
2-1. 금융·세제 지원 근거	
2-2. 금융·세제 지원 대상	
2-3. 금융 지원 방안	
2-4. 세제 지원 방안	



# 1. 신고제

- 1-1. 신고제 근거
- 1-2. 주요 용어
- 1-3. 신고 주체 및 내용
- 1-4. 신고 절차
- 1-5. 신고 혜택
- 1-6. Q&A

## 1-1. 신고제 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 지원을 목적으로 법률 제정

### 법률 제정 연혁

- (14. 10. 24)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 (15. 4. 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 (15. 11.19~12.1)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심사
- (15. 12.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법안심사소위 의결
- (15. 12. 3) 본회의 의결 ⇒ (12.11) 정부 이송 ⇒ (12. 22) 공포
- (15. 12. 22 ~ '16. 6. 22)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 ('16. 6. 23) 법령 시행



## 1-1. 신고제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4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주요 용어

### 신고제 관련 주요용어

#### 의료 해외진출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컨설팅, 인력파견, 기술이전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하는 행위

####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룸

#### 지원기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업무 위탁을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업무 등)

### 1-3. 신고 주체 및 내용

#### 신고 주체

##### 신고 의무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中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자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 1-3. 신고 주체 및 내용

#### 신고 내용

- 의료기관 일반사항 및 진출유형, 형태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의료기관 일반사항	의료기관 및 개설자 정보, 진출국가 및 지역, 현지 설립병원 정보(소재지, 규모 등)
진출유형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컨설팅계약, 인력파견, 기술이전 등 진출유형
진출형태	해외 직접투자 또는 계약방식 중 해당 의료기관의 진출형태
기타사항	현지 연락사무소 설립 여부

### 1-3. 신고 주체 및 내용

#### 신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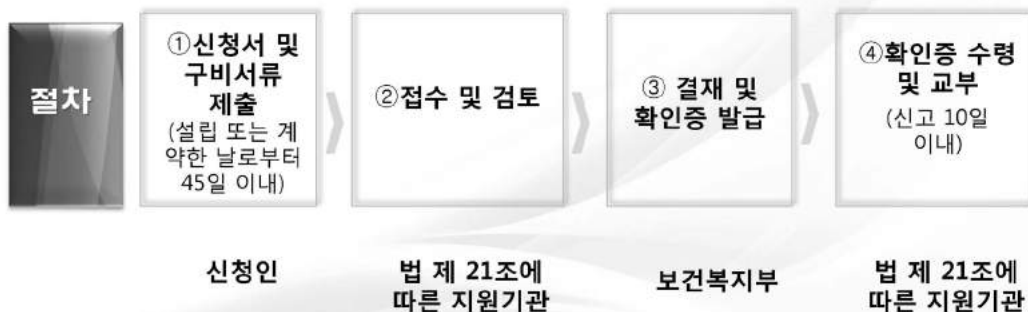
신고사항 중 진출형태의 경우 ① 해외직접투자(단독/합자) ② 계약방식 중 해당 의료기관의 진출 형태를 선택하여 신고(복수선택 가능)

구분	진출형태		내용
해외직접투자(FDI)	단독투자 (Wholly-owned subsidiary)	신설	- 의료기관 및 기업, 개인 또는 정부기관이 단독으로 현지 법인(의료기관)의 지분 100% 소유
		인수·합병	
	합작투자 (Joint Venture)	신설	- 2개 이상의 의료기관 및 기업, 개인 또는 정부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자본, 자원, 투자이익을 공유하는 형태
		인수·합병	
계약방식	라이센싱 (Licensing)		- 무형자산(의료기술, 브랜드 등) 이전의 댓가로 로열티 수령
	프랜차이징 (Franchising)		- 무형자산 이전뿐만 아니라 제반운영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댓가로 로열티 수령 - 가맹계약 체결 형태로 프랜차이즈(가맹점)가 경영
	위탁경영 (O&M)		- 직접경영을 하고 그 댓가로 수수료 수령
	일괄수주 (Turn-Key Project)		- 병원건설 및 설비부터 운영이 포함된 패키지 형태

### 1-4. 신고절차

#### 신고 절차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위탁기관에 신고사항을 접수



1-4. 신고절차

① 신고 서류 구비

의료기관 개설 주체(개인/법인)에 따라 신고서류 구비

구분	첨부서류	근거법령·규칙
법인	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27조
	② 의료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	- 의료해외진출지원법 제4조 2항
	③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자료 -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예, 진출국가에서 발급받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그외의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	- 의료해외진출지원법 시행령 제3조 1항
	④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개인	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27조
	②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자료 -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예, 진출국가에서 발급받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그외의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	- 의료해외진출지원법 시행령 제3조 1항
	③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1-4. 신고절차

① 신고 서류 구비

구비서류 세부사항

- ㉓ 의료기관 개설 관련 증빙서류(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 의료법 시행규칙 제 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제 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 후 발급
- ㉔ 정관변경(법인에 한함)
  - 법인의 경우, 정관에 의료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구비서류 및 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㉕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자료
  - (의료기관 개설·운영시)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다만, 국외·법인을 해당 설립·인수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
  - (그 외의 경우)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서 사본
- ㉖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 1-4. 신고절차

### ② 신고서 접수 및 내용 확인

신고인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신고제 위탁 운영기관에 제출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제출 방법

신고제 시행 후 의료 해외진출 신고 관련 일체를 위탁, 운영하는 지원기관에 서면 제출  
- 신고에 필요한 양식(신고서, 사업운영계획서 등)은 지원기관에서 홈페이지등을 통해 제공 예정  
\* 서면으로 제출('17년 상반기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예정)

#### 내용확인

지원기관의 담당자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구비여부 및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 보완 요청

## 1-4. 신고절차

### ③ 내용 검토 및 확인증 발급

제 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1. 의료기관 명칭
2. 대표자 성명
3. 대표자 생년월일
4. 의료 해외진출 종류
5. 의료기관 주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확인증 발급

- 지원기관은 보완 요청 및 보완 내용의 검토를 통해 신고인의 서류를 최종 확인 후, 보건복지부로 신고확인증을 요청하고, 신고확인증 수령 후 신고인에게 교부함

1-4. 신고절차

④ 신고내용의 변경

신고서 상의 변경사항 발생 시(진출형태, 계약내용의 변경 등), 신고인은 관련 양식을 갖추어 지원기관에 변경사항 신고 및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고내용의 변경

- (신고인) 신고인은 사업 운영계획의 변경, 또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을 포함한 신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관련 양식을 갖추어 지원기관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5항)
- (지원기관) 지원기관은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주무부처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신고확인증을 재발급함

\* 신고확인증 번호는 동일하며, 발급날짜는 재발급일자로 발급 처리

1-4. 신고절차

④ 신고내용의 변경

**의료 해외진출 신고사항 변경통지서** (발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관	?일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종류	
의료기관 주소			
통지인		의료자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명칭	소속부서 직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변경사항			
변경 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의료 해외진출 신고사항 변경통지서

## 1-5. 신고 혜택

### 신고자에 한하여 금융·세제 지원 가능

국가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고제의 취지

-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의료 해외진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진출 국가별, 형태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필요한 관련 금융 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지원혜택 부여

## 1-6. Q&A

### 1. 신고의 의무 등

Q 법 시행일('16.6.23) 이전에 해외진출한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한 신고 시 건별로 신고 혹은 기관별로 한번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 ① 법 시행일 이전에 해외진출한 경우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법 제 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음
- ② 의료 해외진출시 의료 해외진출법 제 2조에 따라 진출건별로 신고해야 함



### 1-6. Q&A

#### 2. 법적 제재 혹은 불이익 등

Q1.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할 경우 불이익 또는 제재가 있는지?

Q2. 미신고시 불이익 또는 제재가 있는지?

①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신고를 기한내 하지 못함으로써 신고확인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미신고시, 법 제 22조 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 제 29조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1-6. Q&A

#### 3. 신고내용의 변경

Q1. 신고내용의 변경처리 시, 지체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체없이'란 어느정도의 기간인지?

Q2. 사업운영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변경통지의 범위)

① 시행령 제4조 5항의 '지체없이'란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통지인의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함

② 계약의 내용 또는 신고서 상 주요 내용의 변경 외에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됨

## 2. 금융·세제 지원

- 2-1. 금융·세제 지원 근거
- 2-2. 금융·세제 지원 대상
- 2-3. 금융 지원 방안
- 2-4. 세제 지원 방안

### 2-1. 금융·세제 지원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1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2-1. 금융·세제 지원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조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 ① 법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해외진출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금공급
  -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금공급
  -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의 우대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 5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신용보증
  - 7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세제 지원

## 2-1. 금융·세제 지원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조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 ②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 2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3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4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③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요건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2. 금융·세제 지원 대상

### 의료 해외진출 신고자에 대하여 금융·세제 지원

#### 신고 의무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中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자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 2-2. 금융·세제 지원 대상

### 금융·세제 지원 요건

#### 지원 요건

-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2-3. 금융지원 방안

#### 의료 해외진출에 특화된 기초성 펀드 활용 지원

#####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 (조성연월) 2015.4
- (조성규모) 500억원 (복지부 100억원 출자)
- (투자방향) 해외진출 의료기관, 의료기기 수출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추진 중
- (운용사) KTB PE &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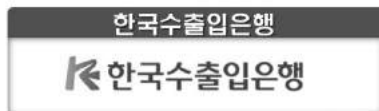
#####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 (조성연월) 2016.1
- (조성규모) 1,500억원 (복지부 300억원 출자)
- (투자방향) 해외진출 의료기관, 바이오 제약 등 한국 의료 패키지 진출 확대를 위해 투자 추진 중
- (운용사) KB인베스트먼트 /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

### 2-3. 금융지원 방안

#### 정책금융기관과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 협력 강화

정책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 해외진출 지원 금융상품 개발,  
기존 금융상품 지원대상에 포함 등 추진



2-3. 금융지원 방안

정책금융기관별 의료 해외진출 지원 개선 추진사항

한국무역보험공사

- 서비스종합보험\* 지원대상 확대 추진 중('16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 중)
  - \* 수출업체가 서비스 거래를 수출하고 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또는 지급국의 비상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
  - 의료서비스, 병원건설 사업을 대상거래에 포함 예정(신설)
-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손실 발생 시 보상

신용보증기금

- '서비스기업 종합지원 방안' 마련 중('16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 중)
  - 8개 보증 우대서비스 유형\*에 보건의료를 포함하여 보증료, 보증한도 등을 제조업 수준 이상으로 우대 계획
  - \* 보건의료, 문화컨텐츠, 교육, S/W, 물류, 관광, R&D, 사업서비스
-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대상에 해외병원 신설, 운영 컨설팅 등 포함 ('16.3.29 개정)
  -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대출 신용보증 지원
    - \* 신용보증료율(평균 연 1.2%) 0.2%p 차감, 'Best Value 기업' 선정 시 보증료율 0.5%p 차감 및 보증비율 90% 적용(통상 85%), 보증한도 우대 실시
    - \* '15년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3.24%

2-3. 금융지원 방안

의료기관 활용가능 정책금융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대출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관련 거래에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수출입은행이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

해외사업자금대출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외사업이행성보증

해외사업 이행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한금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현지법인 사업자금대출

현지법인 사업자금대출은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투자 (지분증권)

대한민국 국민이 투자하는 국내외 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수출입은행이 취득하는 상품

2-3. 금융지원 방안

**의료기관 활용가능 정책금융 : KDB 산업은행**

**해외직접투자자금대출**

국내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 기업이 출자한 현지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파이오니어 프로그램(벤처금융)**

미래선도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보유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및 사모사채 형태로 금융지원 및 금리우대

**역외대출/현지금융**

해외에 설립된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내영업점(역외대출) 및 해외영업점(현지금융)에서 지원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주식 및 주식관련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함으로써 총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

2-3. 금융지원 방안

**의료기관 활용가능 정책금융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입게 되는 손실 보상

**중장기 수출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정부, 공공단체 및 외국법인 등)에게 수출대금을 2년 초과 상환조건으로 대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손실 보상

**서비스종합보험(기성고·연불방식)**

국내 수출업체가 시스템통합(SI), 기술서비스, 콘텐츠, 해외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 거래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 보상

**해외사업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정부, 공공단체 및 외국법인 등)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 가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대출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을 때 손실 보상

2-3. 금융지원 방안

의료기관 활용가능 정책금융 : 신용보증기금

구분	정의
시설자금 보증	병원 신축, 의료용 장비 구입 등 시설구축에 필요한 자금(국외에서 의료장비를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
예비창업자 보증	미래성장성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사업개시 이전이라도 보증심사를 통해 사전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업력 7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 대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우대 지원하는 보증
퍼스트펍권기업 보증	성장 가능성이 특히 뛰어난 창업기업을 심사·선정하여 별도의 보증프로그램으로 3년간 금융, 비금융을 망라하는 종합지원을 하는 보증제도
고용창출기업 보증	고용창출능력이 우수하고, 산업연관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 보증을 우대하여 지원
고부가가치 창출 유망 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증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보증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제도
Best-Value 서비스 기업 보증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효과가 특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을 선정하여 보증을 특별 우대하는 제도

2-3. 금융지원 방안

의료기관 활용가능 정책금융 : 기술보증기금

구분	정의
대출보증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으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비은행대출보증	비은행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또는 기타대출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부터 어음할인 및 매입을 포함한 각종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회사채보증	증권시장에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 보증
담보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사채인수보증	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의 보증
상거래담보보증	기업이 상거래계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함으로써 판매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
유동화회사보증 (P-CBO)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가 인수하여 유동화자산을 구성한 후 발행·유통하는 증권에 대한 보증
전자상거래대출보증 (B2B보증)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2-4. 세제지원 방안

### 세제 지원의 수요 및 한계

#### 세제지원 수요

- 의료기관으로부터 세제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수요 존재
  - 해외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지원 요청사항으로 정책/법률지원이 29%로 가장 많음

소득세법	법인세법(+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파견 국내 의료진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범위 확대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전입한도 비율 확대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위한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 마련 요청</li> </ul>

#### 세제지원 한계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만으로 조세특례 한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조약 및 각 호에 열거된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조세특례 불가

## 2-4. 세제지원 방안

###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기재부 제출('16.4월)

#### 조세 관련 법령 개정 절차



